



믿음으로 가득찬 장바구니



「축협 축산물판매장」

우리 입맛에 맞는 축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적당한 가격.
당연한 바램이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축협이 이 일을 맡겠습니다.
축산농민의 기쁜 정성을
도시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에 담는 일—
축협은 작지만 이 소중한 일을 통해 고향과
도시를 연결하는 마음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축협의 「축산물 시범판매장」과
전국 회원조합의 「축산물판매장」은
우리 축산물의 참맛과 함께
믿음을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축협



월간여성 6월호(통권308호) / 1993년 6월 10일(매월 10일) 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무편번호 140-013)

여성

특집 성폭력 대책관련 입법에 관한 공청회



6
1993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월간여성 6월호(통권308호) / 1993년 6월 10일(매월 10일) 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라-7 / 우편번호 140-01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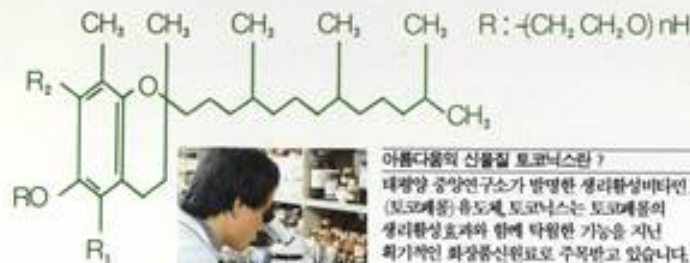
태평양중앙연구소 발명 “신물질 토코닉스”

획기적인 화장품신원료, 토코닉스의 특성

- 피부자극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피부보습력이 탁월합니다.
- 세포 보호효과가 뛰어납니다.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줍니다.

특허획득 및 출원상황

- 미국 물질특허 획득 (93. 1. 28)
- 국제 물질특허 출원—세계 9개국
- 국제 화장품 조성물 특허출원—세계 15개국
- 관련 물질특허 국제출원—세계 5개국



대통령표창 수상—발명의 날
태평양의 생산담당 오완식 부사장이 토코닉스를 비롯한 신물질 개발과 특허관리에 대한 공적으로 발명의 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 토코닉스는 아미노산에 비타민 E, 세라마이드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코닉스 발명의 신실—태평양 중앙연구소

월간 여성 6월호 통권 308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4 女聲
우리의 농산물을 지키자 / 윤수자

특집 / 성폭력 대책 관련 입법에 관한 공청회

- 6 특집①
성폭력 대책관련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그 방향 / 최영애
- 11 특집②
성폭력 대책관련 법률(안) 중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 / 김영란
- 18 해외여성통신
프랑스의 가사봉사원 제도 / 최신덕
- 20 알아들시다
주택취득시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의 남녀차등 없어져
- 22 여성학 지상강좌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이해 / 추애주
- 25 쏫점
남녀 차별정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 28 신규가입단체 소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 29 마스크에 비친 여성①
방송 3사의 봄철 프로그램 개편, 실속없다
- 32 마스크에 비친 여성②
여성상 왜곡 묘사 여전한 주말연속극
- 34 여성계 동향
- 36 우리들의 공장
- 38 협의회 소식

우리 농산물을 지키자



윤수자 (고령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장)

모내기 끝난 파릇한 논, 녹음이 짙어지는 농촌풍경은 평화스럽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농촌은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은 것 같다. 거세게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과 쫓마져 개방하라는 국제적 압력은 농민에게 시름을 더해주고 이농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다. 특히 쌀은 역사와 더불어 민족의 생명줄로서 얼과 배알을 간직해 왔고 우리 전통과 문화가 쌀 농사와 더불어 지켜지고 계승되어왔다. 따라서 앞으로도 쌀농사문화에 온 국민의 의식과 노력이 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의식은 어떻게 됐는가? 국민과 농촌을 위한다고 목청을 높여온 위정자들은 재산공개 결과 부정부패와 투기로 점철되어 우리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어떻게 절대농지를 사들이고 그린벨트 지역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고급 주택을 지을 수 있었는지 보통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농촌의 어려움이 나라와 국민 모두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농민들만의 문제로 여겨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쌀수입개방을 주장하는 대세론자, 비교우위론자, 외국 농산물 수입업자가 마치 자기만이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니 외분을 금할 수 없다.

50~60년대 보리고개라는 가난 때문에 무상 외국 밀가루를 먹다보니 젊은이들은 분식과 인스턴트 식품에 입맛이 젖어 우리 것을 잊어가고 있다. 또 일부 주부들은 편히 살려는 성향 때문에 라면 등 가공식품과 외국 농산물을 많이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젊은이의 체질은 허약해지고 아침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습관화 되는가 하면 어린이 성인병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체질에는 우리 농산물이 맞는다라는 身土不二(신토불이)의 뜻이 새삼스럽다.

요즘 농촌은 91년 한해만도 휴경

된 땅이 6만7천ha가 넘고 농촌을 떠난 사람이 50만명이 넘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손은 더욱 부족해지고 국토는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업소득의 약 50%를 차지하는 쫓마져 개방압력에 직면해 있는 위기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쌀 수입개방을 저지하고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4천3백만 모든 국민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일이다. 가정의 경제권과 가족의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이 이제는 쌀 수입개방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물론 우리 생명창고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만들어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책임 의식이 뒤따라야 하겠다. 이제 문명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우리 주부들도 알뜰한 가계운영과 검소한 생활로 우리 농산물 애용정신을 살려 우리 먹거리를 지키고 쌀 수입개방을 저지하며 우리 일을 지키는데 너와 내가 없이 앞장서야 되겠다.

특집

성폭력 대책관련 입법에 관한 공청회

- 1 성폭력 대책관련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그 방향
- 2 성폭력 대책관련 법률(안) 중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

여성계의 관심이 성폭력 대책관련 법률 입법에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민자당 안과 민주당안, 국민당안, 여연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중에서 성폭력 대책관련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그 4개안을 비교검토했던 부분을 발췌 소개코자 한다.

성폭력 대책관련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그 방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I. 성폭력대책관련법률의 입법 필요성

1. 심각한 성폭력 실태: 양적 증가
현상과 성폭력범죄유형의 다양화, 흉
포화, 신종범죄 출현, 피해의 극심함

1)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범죄발생은
세계3위를 점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
가추세에 있다. 검찰집계에 따르면, 80
년에 연간 5,614건이던 강간범죄가 89
년에 6,475건, 90년에는 7,322건으로
늘었고, 92년 1월부터 3월까지 석달동
안 일반범죄의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2%가 감소했으나 강간
범죄등 성폭력범죄는 1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친고죄 및
정조이데올로기에 의해 신고율이 지
극히 낮고 수많은 성폭력이 은폐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세계최대를 차지할 것
이라고 판단된다.

2) 또한 신종범죄(컴퓨터이용, 음란
전화 등)가 증가되고 갈수록 성폭력은
다양화, 흉포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대상은 대부분 여성
이며 이들 피해여성들의 불복정성으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해
일반여성의 94%가 성폭력에 대한 불
안감을 갖고 있으며 스트레스 1위 요
인이 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의 연령은 최하 만6개
월에서 70여세까지이며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전체 성폭력의 30%를 점하
고 있다. 또한 연령뿐 아니라 모든 계
층에서 직업이나 신분상 상관없이 일
어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92년 상담통계
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의 연령분포는
13세미만의 어린이가 28.4%, 중고생이
19.5%, 성인 52.1%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남자어린이가 성인남성에 의해
성폭행당한 사례도 5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
계를 보면 강간사건 951건중 695건
(73.1%)이 친인척, 이웃, 데이트상대,
선배, 직장상사(동료)등 아는 사람이
었다.

3) 성폭력피해후유증은 매우 심각해
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극심한 상
황이다. 성폭력은 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남긴다. 개인

적으로는 피해여성을 심리적으로 위
축시키고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며
신체적 후유증을 견뎌야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전반에 걸쳐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여성을 통제하고 불평
등한 상태를 영속화하는 데까지 이
르게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19
91년)에 의하면, 성폭력을 경험한 여
성들의 60~70%가 일과 공부에 지장
을 받거나 행동을 제약받는 등의
사회적 피해와 불쾌감, 불면, 우울증,
사건재발에 두려움 등의 정신적 피
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호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 술과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강간미수 2.4%와 강간 5.3%), 심지
어는 자살을 기도하는 등의 자해행위
를 했던 여성도 강간미수의 경우 0.7%,
강간의 경우 4.7%이다. 신체적 피해
로는 강간의 경우 23.3%에 달하는 여
성들이 상해(10.0%), 임신(12.0%),
성병(1.3%)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그러므로, 성폭력은 더이상 개인
문제로 남겨둘 수 없으며 사회적 범
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 현행법을 재검토하여 시
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으로 재정비
할 절대적 필요성을 갖는다.

2. 현행법의 문제 및 한계

1) 실체법상의 문제

가. 법규정의 미비 및 산재

실제 성폭력의 범주에는 강간, 강제
추행, 의제강간, 근친강간, 아내강간,

인신매매, 강요된 매매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성형외행위(음란도화,
통신수단을 통한 성폭력, 공중밀집장
소에서의 추행 등)등 매우 다양한 형
태의 성폭력범죄유형이 포함되고 있
다.

그러나 현행법체계하에서는, 현행
성폭력관련 법조항이 형법개정안(강
간과 추행에 관한 죄, 성폭속에 관한
죄, 약취유인의 죄), 경범죄처벌법, 아
동복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산재되어 있음으로 인해, 위와 같은
다양한 성폭력을 성폭력의 연속선상에
놓는 법체계로 다루고 있지 않고 각기
다르고 분리된 행위로 개념화시키고
있다.

이것의 문제점은, 첫째, 성폭력범죄
범주를 강간, 강제추행, 의제강간등으
로 극히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각각의 성폭력형태에 대해 정도
의 차이를 문제시 하지 않고 성기삽
입여부만을 따지는 양분법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양
분법적 접근의 결과, 많은 유형의 성
폭력이 현행법(또는 형법개정안)의
규제에서 빠져서 되어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성폭력의 예방, 치료, 피해자
보호, 가해자교화에 대한 대책과 특별
처리절차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음으
로 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상습범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나. 개념규정의 문제

현재 법체계상 성폭력범죄규정의
보호법익은 "정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폭력과 여성의 성성(sexuality)
에 대한 남성중심적 시각 반영이며,
성폭력범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왜
곡시킨 잘못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즉 현행법은 성폭력은 여성의 성성에
대한 폭력범죄가 아닌 일종의 성관계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을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
지 않고 "지켜야 할 정조"만을 지닌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법개정안에서도 "정
조에 관한 죄"를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재규정하고 있을 뿐, "성적자기
결정권침해의 죄"로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몇몇 조항에서는
여전히 "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등 남성중심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
다.

이와같이 성폭력을 개인여성의 정
조를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는 법조항
은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불행으로 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사실을 은
폐시키고, 자살을 기도하거나 가해자
를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정조와 더불어 자신
의 성성에 대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식의 변화를
법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가 되었
다.

다. 대상의 문제

형법 제297조의 강간,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등의 경우
대상이 모두 부녀로 되어 있다. 이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성이 더 큰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는 처녀성과 정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성적자유침해"로서의 피해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 자기비하, 자기부정의 정신적 피해, 결혼이 어렵고, 사회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남성은 동정이나 정조는 잃어도 사회적 손실이 적기 때문에 피해감정이 경미할 것이라고 보는 사회의 이중적 성윤리가 그대로 법제계에 반영된 것이다.

라.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의 문제

현행법은, 성폭력 유형을 각각 분리시켜 놓고 특정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는 성폭력유형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판별하고, 각각의 성폭력 형태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를 문제시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성립되는지 성립되지 않는지를 따지고 있어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동의한 것도 아닌 "비동의 간음" (성적자기결정침해)이나 추행등 많은 주변적인 성폭력과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성폭력의 하나인 근친강간등이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계를 갖게 되며, 남성성기중심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이는 현행법제계가 강간, 강제추행 등 몇가지 유형을 정해 놓고 그 분류에 속하는 것만을 법적으로 제재, 각각의 성폭력을 서로 분명하게 다른 독립된 행위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로서, 현행법 제297조에서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행위"로 규정하는 강간범죄의 구성요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간음행위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질 속에 삽입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이외에 아무리 심한 성추행(항문, 구순, 이물질 삽입 등)이라도 강간범주 밖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강간에 준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중처벌되는 경우가 적어지게 될 우려가 많다.

마. 형량의 문제

형법개정안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범죄(강간, 준강간, 의제강간)등을 강도범죄의 양형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다. 또한 피해·향락산업의 비대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형법개정안의 형량(영리약취, 유인, 매매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그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고 보여진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74.9%가 무거운 처벌이 성폭력범죄를 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92.9%가 법정 양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그대로 두되 판사의 형량은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43.8%는 법정양형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 절차법상의 문제

가. 친고죄의 문제

현행 성폭력관련법은 직계 존·비속간의 성폭력, 강도강간, 윤간등을 제외하고 친고죄로 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관련법이 친고죄로 되어 있는 이유는 죄질이 경미해서라기 보다는 피해여성의 명예를 고려하여, 자신이 고소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상에 드러내어 여성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

지라고 본다.

그러나 친고죄조항은,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며, 성폭력을 사회적 폭력이나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기 보다는 한 개인의 불행으로 보는 잘못된 성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친고죄로 인해 오히려 성폭력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한다고 본다.

친고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로는 상습범 양산, 경찰이 피해사실을 인지해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석방, 보호시설(고아원, 보육원, 장애인보호시설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경우 고소와 법적 대응이 어렵고, 근친강간의 경우 친권자(대리고소인)인 어머니가 폭인, 방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형사소송절차상의 문제

성폭력범죄의 경우 또다른 피해자가 음성적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행위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과 재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관계자들의 남성중심적 사고와 태도의 결과, 피해자가 망설임없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노출시켜 좋을 것이 뭐 있느냐?", "다른 일도 바쁜데 성문제까지 다루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합의중용 및 불기소처리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난 2월6일 도곡동에서 발생한 청소년성폭력사건의 경우, 결국 피해자 부모가 직접 나서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던 일이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인, 피해자의 반항정도, 고소시기와 고소

동기, 피해자의 평판 및 성력, 피고인의 성기삽입시 피해자의 느낌등에 초점을 두는 등 가해자의 범죄행위보다는 피해자의 심문과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 사회복지서비스

성폭력범죄가 문제있는 남성과 불운한 여성이 당하는 범죄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피해·향락산업의 만연, 부의 불균등분배, 고용불안정 심화와 3차서비스산업의 유인력증가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엄벌주의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측면에서의 예방과 사후대책이 포함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II.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효과

1. 법제계는 보편적인 사회규범을 선도하고, 사회구성원의 가치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은 성폭력예방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 엄벌주의정책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이제까지 성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인식해 오던 일반인의 의식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환경조성을 유도할 수 있다.

3.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기존 수사, 재판 절차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특별처리절차나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기관, 가해자 교화에 관한 행정적

사항을 적절히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폭력근절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III. 법 제정방향

1.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2. 보호법익의 개념이 전환되어야 한다.

성폭력의 법적 개념규정을 "성적자기결정침해죄"로 규정하여야 한다.

3. 성폭력범죄를 행위별, 대상별, 주체별로 세분화하고 형벌을 강화, 다양화한다.

1) 행위에 따라서

성적자기결정침해죄/강간, 강제추행/준강간, 준강제추행/강도강간/인신매매, 강요된 매매춘/공연음란/성협오행위

* 성적자기결정침해죄: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성폭력, 예를 들어 데이트강간, 여관유인강간, 직장내 강간에 대한 규제가 용이해진다.

2) 대상에 따라서

직장내 성폭력/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15세 미만의 자 등에 대한 간음/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상시 성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간등

3) 형벌의 강화 및 다양화

강간 피해자들의 피해휴직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강도죄보다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 엄중처벌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 가해자에 대한 단죄적 성격의 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치료적 성격을 내포하는 처벌방법을 다양화(가중처

벌, 보안처분, 교정처분명령, 공무원의 처벌 불이익 취급, 해방감경 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발생을 조장, 방임, 협조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4. 친고죄 폐지, 일부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 친고죄 폐지효과
-가해자에 대한 범죄증거의 우선적 확보 가능
-체포, 구속이 가지는 범죄억제효과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적폐비속이 적폐존속에 대한 고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해결
-문제가 되고 있는 고소기간의 문제해결

*참고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도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친고죄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드물며, 우리나라 성폭력피해자의 대부분(73.6%)이 친고죄가 폐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여성개발원,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0).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치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의 성폭력을 조기에 발견,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성폭력신고체계가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체계를 법적 규정으로 완비하고 있다.

5. 성폭력대책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명시

1) 관계법령의 제정
2) "성폭력특별위원회"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사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 및 성폭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성폭력특별위원회 설치

3) 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4)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의 제거

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의료의 제공

7) 피해자보호시설 및 가해자교화시설의 설치

8)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필요한 협조

9)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10) 기타 성폭력대책에 필요한 시책 마련

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확충과 업무 명시, 이에 대한 감독 강화

1) 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행하게 하는 것,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환경의 조사 및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조인 및 정보의 제공,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해자보호시설에 있도록 하여 계속될 우려가 있는 성폭력 및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피해자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적 요양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치료, 집단치료의 과정을 마련하는 것, 단계별 다양하고도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기타 피해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

2) 사회복지법인이나 여성단체 등이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이들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비분담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7.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보

호 절차

1) 피해자의 참여권 규정
-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인이 검사와 별도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서의 출석권 인정

2) 배상판결
- 기존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서 성폭력사건에도 확대 적용

-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기존 재산상 물적 손해에 한정하던 것을 위자료등 청구에까지 확대함.

3) 비공개 수사, 재판

4) 피해자의 신속한 증거 확보 조치
- 보건소, 종합병원내에 성폭력전담 부서설치

- 상담사례기록철 등 관련기관의 증거물을 증거물로서의 가치 인정

8. 성폭력범죄의 관할을 가정법원 산하에 두고, 재판전 조사절차를 위한 조사관제도를 활용

1) 피해자의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고소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이 고소취소강요등 부당한 압력이나 수치심, 공포심을 일으킬 불필요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2) 재판전 조사절차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인,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전이라고 하더라도 가정법원 조사관이 경찰수사에 선행하여 성폭력사실에 관한 조사를 행할 수 있게 함.

- 조사관의 현장조사, 현행법 체포를 위한 활동명시

- 조사관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정

- 판사가 작성한 서류는 증명력 인정

3) 동행자지정신청권
가정법원장은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에 참여할 동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가정법원장이 지정한 동행자를 수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침해가 없도록 함.

4) 재정신청권
검사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인정하여 부당한 수사로 연결된 불기소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이때에는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의한 명시적 처벌불원의사유도를 재조사하게 함.

5) 성폭력사건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피해자가 재판상 준당사자적 지위를 보장받음에 따라 다른 재판과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형사법원으로부터 관할을 배제하고 비공개재판등 피해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그에 적합한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특집 2

이 특별법안의 규정대상을 폭력성 또는 공격성이 포함된 행위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폭력성이 없는 모든 음란한 행위까지도 포함할 것인지는 매우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한 입장을 먼저 정립한 후 규정의 범위와 법률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다.

성폭력 대책관련 법률(안) 중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

김영란 (대법원재판연구관 겸사)

1. 입법형태에 관하여

현재 검토대상이 된 법률안은 모두 4개안으로서 여기에서는 편의상 발의된 순서에 따라 강선영·주양자의원의 20인 발의안을 제1안으로, 박상천의원 외 95인 발의안을 제2안으로, 변정일 의원 외 29인 발의안을 제3안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법청원을 여연안으로 칭하기로 하겠는데 이들 법률안을 범죄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보면 크게 2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의 기본법인 형법과 이에 대한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상의 성폭력행위와 관련 있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특별법에서 일부 범죄를 가중처벌하거나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이나 좀더 구체화된 유형의 구성요건을 새로이 규정하는 방식의 보완적인 입법형태인데, 제1안, 제2안, 제3안이 모두 이에 속한다. 다만 제2안에서는 특가법의 일부조문을 삭제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체계면에서는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기왕의 형법과 특가법중 성폭력행위와

관련있는 조항을 모두 추출하여 이 특별법에 흡수·통합함과 동시에 그 이외에 새로운 유형이나 좀더 구체화된 유형까지 발굴하여 이 특별법에 함께 규정하는 망라적 입법형태인데 여연안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안을 입법기술상 형법, 특가법등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규정미비로 보여진다.

이같은 상이한 입법형태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범죄구성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들을 모두 기본법인 형법에 흡수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면 이 특별법안에 모두 흡수 규정하는 방식의 두 방식중 한 방식을 양자택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구성요건이 형법, 특가법, 성폭력특별법등으로 여러 법에 분할 규정되어 거기에 원용과 준용이 중첩되거나 하면 법조 실무자들도 숭박복잡하듯 법규정을 찾아 다닌다고 하여 「숭박복잡법률」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를 잘 알고 지켜야 할 일반국민들에게는 불친절하고 짜증나는 법률이 될 우려가 있다.



2. 형법상 구성요건의 개정 부분에 관하여

(1)

기존 형법상의 기본적 범죄유형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및 이 행위들에 의한 치사상죄」에 관하여 제1안, 제2안 및 제3안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 현행 형법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여연안만이 이들 범죄들을 이 특별법으로 가져 오면서 몇가지 개정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성적 자기결정침해의 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여성을 강제로 간음한 자」와 「강제로 특히 중한 추행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강제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이다. 아마도 이 개정 주장의 취지는 현행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종래의 학설 또는 판례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강도높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한다고 실시하여 온 데 대하여, 이는 자칫 피해자 여성에게 크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그 요건을 크게 완화한 형태의 성폭력범죄를 신설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컨대 이같은 주장은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하겠는데, 다만 이를 위해서 여연안과 같이 「강제로」라는 한마디로 구성요건을 구성할 경우 이는 매우 불확실한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고 입증상

의 애로등 실무상의 문제도 대두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그같은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치하게 행위유형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형법상의 죄들과 관련하여 기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법개정안에 준강간죄등의 구성요건이 「정신장애 기타의 사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로 되어 있는 점,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에 의한 치사상죄가 세분되어 살인, 상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등은 매우 고려할 만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의 개정을 위해서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 특별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2)

다음으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와 관련하여, 이 부분 역시 제1안, 제2안 및 제3안은 현행 형법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 비하여, 여연안에서만 이 특별법으로 가져 오면서 개정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경우 현행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을 요건으로하여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연안은 「강제로」를 요건으로 하여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도록 하면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다소의 문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보호자·감독자 간음죄」와 관련하여서는 각 안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1안은 현행대로 형법체계와 규정을 유지한 데 반하여, 제2안, 제3안 및 여연안은 위 형법규정을 이 특별법으로 가져 오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범행방법에 있어서 제2안은 「직장 또는 계약관계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로, 제3안은 「교육, 훈련, 업무, 고용 및 이에 준하는 계속적 계약관계나 기타 지휘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형법규정의 해석상으로도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의 개념속에 업무, 고용 이외에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규정과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여연안은 이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간음한 자를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보다 약한 정도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4)

다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이 부분도 제1안, 제2안 및 제3안은 현행 형법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 반하여 여연안에서만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여연안이 미성년자에 대한 단순간음·추행행위가 강간·강제추행죄로 의제되어 엄하게 처벌되는 대상연령을 현행 13세에서 상향조정하여 15세로 한 점에 관하여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법개정안이 14세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감

안하면서 입법정책상 합리적인 기준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5)

그리고 「해상강도강간죄」와 관련하여서는 각 안이 모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현행 형법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데 여연안이 망라적 입법방식을 취하면서 이 점을 간과한 것은 미비점이라 생각되었다.

(6)

다음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음행매개죄」와 관련하여 보면, 제1안은 현행 형법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2안과 제3안은 음행매개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법정형을 형법규정보다 상향조정하였고, 여연안은 「여성으로 하여금 강제로 추행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형법개정안이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점 및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 제6조, 제15조의 규정이 「윤락행위를 유인, 강요하거나 처소를 제공한 자」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이 「윤락행위자 또는 그의 상대방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영입으로 위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이 특별법을 성폭력에 관련된

는 모든 규정을 포괄하는 망라적 입법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들을 보완, 수정하는 보완적 입법방식을 취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위 행정특별법들의 규정들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입법상 참작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다.

(7)

다음으로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의 반포, 판매, 임대, 전시 및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와 관련하여, 제1안은 현행 형법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제2안과 제3안은 이들 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법정형을 형법규정보다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여연안은 위 형법규정을 이 특별법으로 가져와 「건전한 성문화에 저해되고 성폭력행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도화,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공중에 판매, 공연,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장소에 성폭력행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도화 기타 유해한 내용을 제공하거나 그 이용에 편의를 주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연안이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재고를 요하는 것으로 보였고 이외에도 현행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제18조 제7호, 제11조, 제34조 제4호의 규정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판매, 반포, 공연,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부분에 관하여

다음에는 기존의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전혀 규정되어 온 바 없는 새로운 유형의 구성요건이나 기존의 구성요건중 좀 더 구체화하여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을 느낀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이 거론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먼저 「중강제추행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보면, 이에 관하여는 각안이 모두 채택하고 있고 구성요건의 표현도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종래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가기는 하나 그 죄질이 특히 중한 탓으로 이를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채택에는 이론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여연안에서는 동 구성요건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이보다 크게 완화된 구성요건으로서 「성적자기결정침해의 죄」의 일종으로 「강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요건의 구성상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강제추행죄에 준하는 죄는, 이 역시 각 안이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는 이론이 없을 듯 한데, 다만 제1안은 「정신장애 기타의 사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로, 제2안은 「심신장애나 신체장애 기타의 사유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제3안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로 표현하고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2)

다음으로 「미성년자의 제 중강제추행죄」라고 할 수 있는 죄의 신설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제1안은 아무런 언급이 없고 제2안과 제3안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연안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미성년자의 제기간, 의제강제추행죄와 맥락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죄에 대한 형법개정안은 14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도 참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다음으로, 「특수중강제추행죄」의 신설문제. 이에 관하여 제1안과 제3안은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2안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특수강간 및 특수강제추행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특수중강제추행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여연안은 「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아무튼 동 규정은 특수강간죄등과 맥락을 같이하여 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였다.

(4)

다음으로 「중강제추행상해·치상 및 살인·치사죄」의 신설문제인데, 제1안은 중강제추행죄, 특수중강제추행죄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

게 한 때, 사람을 살해한 때 및 사람을 치사케 한 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안과 제3안은 치상과 치사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연안은 상해, 치상, 살인, 치사의 경우를 각기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입법상식은 제1안이나 여연안이 좋을 것 같고 그 구체적 내용은 법정형을 여러 단계로 세분할 것인지를 정함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였다.

(5)

다음으로 「직장관계에 있어서의 추행죄」의 신설문제. 제1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직장에서의 업무상 감독 또는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자」와 「같은 목적으로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여자를 추행한 자」를, 제2안은 「직장 또는 계약관계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자」를, 제3안은 「교육, 훈련, 업무, 고용 및 이에 준하는 계속적 계약관계나 기타 지휘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자」를, 여연안은 「교육, 훈련, 업무, 고용 및 고용에 준하는 계속적 계약관계 기타 지휘관계를 이용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1안이 동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한 점이 특이하였는데 과연 이를 구태여 목적범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스러웠으며, 또한 여연안과 같이 「강제로」 범행한 경우로 제한할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을 것임이 염려되었다.

또한 동죄와 관련하여 제3안은 중추행의 경우를 따로 설치하면서 간음의 경우와 함께 처벌하려 하고 여연안은 「강제로」 중추행한 경우를 간음의 경우와 함께 처벌하려 하고 있는데 구체적 행위의 유형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하는 느낌이 없지 않으나 기왕에 중강제추행죄를 신설하는 마당이라면 중추행을 보다 중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졌다.

(6)

다음으로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감호자추행죄」의 신설이다. 이에 관하여 제1안은 규정이 없으나 제2안, 제3안 및 여연안은 공히 신설규정을 두고 있다. 감호자구금죄가 현행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데도 추행죄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규정 역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3안이 위계 또는 위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은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생각되었다.

동죄와 관련하여 감호자의 중추행행위를 따로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제3안과 여연안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생각컨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반대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7)

다음으로 「존속 또는 연장의 친족관계를 이용한 간음등의 죄」의 신설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제1안과 제2안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제3안과 여연안은 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존속 또는 연장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방법으로 간음, 중추행 또는 추행한 경우 이에 대해 특수관계로 인해 대항하기 어려운 여성

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역시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도 좋다고 생각되었다.

(8)

다음으로 「성폭력단체구성죄」의 신설문제. 이에 관하여는 다른 안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제2안에서만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또는 간음, 추행 또는 추행을 위한 약취, 유인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신설하려는 뜻은 짐작할 수 있었으나 과연,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죄등을 범할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다만 추행등을 위한 약취, 유인등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같은 것은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특별법 등과 연관시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요건을 마련하여야 하리라고 보았다.

(9)

다음으로,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장소에서의 추행죄」 신설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4개안이 모두 신설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제1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연·집회장소에서 여자에게 추행한 자」를, 제2안은 「제1안과 같은 목적으로, 버스, 지하철, 극장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여자를 추행한 자」를, 제3안은 「제1안과 같은 목적으로 버스, 지하철, 극장, 공연장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동의 없이 부녀를 추행한 자」를, 여연안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거

공격적인 여러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한다면 피해자여성은 종래처럼 고소라는 공개적이며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단순한 사건 신고 또는 제보 정도로도 사건화할 수 있고, 종래의 적극적인 고소가 후환의 우려가 있었던데 비하여 오히려 고소로 인한 후환의 걱정은 줄어들게 되며, 또한 피해자 여성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화될 수 있어 범행이 덮여버리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나 하려는 등의 행위로 불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제1안, 제2안, 제3안이 모두 이 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인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뿐 아니라 성도덕 일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추행의 개념속에 이미 비도덕적인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측면이 있으므로 동 죄를 과연 목적범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나아가 동의여부를 구성요건상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10)

다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신설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도 4개안이 모두 신설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제1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또는 우편물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제2안과 제3안은 「제1안과 같은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언어, 음향, 문서, 도화, 영상, 물건등을 타인에게 전달 한 자」와 「전화, 우편 기타 통신매체등을 이용하여 여자에 대하여 그 동의없이 자기의 치부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한 언어, 음향, 문서, 도화, 영상, 물건등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모욕감을 일으킨 자」를, 여연안은 「유선, 무선의 전화등 통신수단을 통한 또는 직접 대화를 통한 음란한 말, 화면 기타의 방법으로 사람을 희롱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역시 동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보았으며 그외의 표현상의 차이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1)

다음으로 「성기노출죄등」의 신설문 제이다. 이에 관하여도 4개안이 모두 신설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제1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자」를, 제2안과 제3안은 「제1안과 유사한 목적으로, 여자에 대하여 그 동의없이 자기의 치부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한 언어, 음향, 문사, 도화, 영상, 물건등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모욕감을 일으킨 자」를, 여연안은 「치부노출등 행위자 스스로의 성적인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회롱하는 행위, 기타 사람에게 성에 관한 혐오감을 줄수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도 목적범 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구성요건내용은 좀 더 정확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12)

다음으로 「성적해악고지죄」의 신설 문제. 이에 관하여는 다른안에서는 언급이 없고 제2안만이 「타인에 대하여 간음, 추행 기타 성적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생각컨대 이는 형법상 협박죄의 가중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 기조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구태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13)

다음으로 「상시 성적관계에 의한 자에 대한 강간죄등」의 신설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제1안, 제2안, 제3안은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반면, 여연안만이 「夫가 처에 대하여 강간, 중간제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준중간제추행, 준강제추행의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상 처에 대한 강간죄등의 성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는 하나 그 취지가 다소 불명한데, 우리 형법은 혼인외의 성교를 강요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독일 형법과는 달리 단순히 부녀를 강간할 것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해석상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볼 소지도 상당히 크다. 아무튼 처에 대하여 극히 포악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후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처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데는 큰 이론이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성에 관한 사회의식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할 것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전형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4. 기타 사항에 관하여

(1)

먼저 법정형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지나친 엄벌주의가 오히려 살인 등 더 큰 범죄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동안 주로 여성계폭에서 우리나라의 법률 관계자들이 대부분 남성인 탓으로 피해자 여성의 입장이 다소 소홀히 취

급되어 선고형량이 낮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므로 법정형 자체를 상당히 높게 책정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이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법조실무와 관련하여서 보면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재량의 폭이 지나치게 좁을 경우 그 죄의 적용자체를 꺼려하여 오히려 가혹한 처벌로 끝나고 말 수도 있는가 하면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을 선고하여도 국민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행위유형과 죄질에 따른 형평에 대한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2)

다음으로 천고죄 문제이다.

우선 성폭력행위중 폭행·협박등 신체적, 정신적 위협의 강도가 큰 행위로 인한 「홍포범죄」의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비친고죄의 범위가 종전보다는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일부 성범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가 여성을 위한다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 여성을 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래에는 여성이 감추기를 원할 경우 무작정 감출수 있게 해 준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친고죄로 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여성들 스스로 그 같은 일을 자꾸 감추려고만 한 탓으로 사회전체적으로는 성범죄피치분위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제고되고 이제는 가급적이면 문제화, 사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사고

가 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피해자 여성의 고통을 적게 하면서 사건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공격적인 여러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한다면 피해자 여성은 종래처럼 고소라는 공개적이며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단순한 사건 신고 또는 제보 정도로도 사건화할 수 있고, 종래의 적극적인 고소가 후환의 우려가 있었던데 비하여 오히려 고소로 인한 후환의 걱정은 줄어들게 되며, 또한 피해자 여성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화될 수 있어 범행이 덮여 버리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문제인데 일부 범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였다. 그리고 구형법에서 찬고죄이던 폭행죄등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홍포범죄」의 경우까지 반의사불벌죄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었다. 왜냐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실무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처벌의사를 취소했을 때 공소기간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인데 과연 「홍포범죄」의 경우까지 그같은 혜택을 베풀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합의등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감형, 집행유예등 관대한 처분을 할 수는 있다 하겠지만 공소권까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그 범죄의 「홍포성」에 비추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친고죄에 관한 이같은 시각의 전환은 장기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과 구별하여 보려던 종래의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범죄자를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감정도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노출등 문제들은 여러 특별절차에 의하여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3)

다음으로 병과처분 문제이다.

보호관찰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명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으며 기왕이면 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고, 성인의 경우에
도 보호관찰법이 준용되도록 하면 좋
한 것으로 보았다.

보호감호에 관하여, 제1안, 제2안, 제3안과 같이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외 교정처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 입법례가 거의 없어 집행방법등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4)

마지막으로 이 특별법의 명칭, 성폭력행위의 범위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각 법안의 구성요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격적인 성적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에는 공연음란죄, 성기노출죄, 음화반포죄, 음행매개죄 등 일반적인 성협오행위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과연 이 특별법안의 규정대상을 폭력성 또는 공격성이 포함된 행위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폭력성이 없는 모든 음란한 행위까지도 포함할 것인지는 매우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한 입장을 먼저 정립한 후 규정의 범위와 법률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또한 어느 안에서처럼 공연음란죄는 이 특별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성폭력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성기노출행위는 성폭력행위로 보는 모순같은 것도 수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프랑스의 가사봉사원 제도

1. 머릿말

서구의 현대가정은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하여 전통사회의 가정기능이 약화되어 있는데 특히 부모중 한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될때 가정관리에 문제가 생겨 학교 다니는 자녀는 귀가하여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장기간 휴가를 얻기도 곤란하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사회복지사의 일종인 가사봉사원제도를 두고 있다.

가사봉사원의 역할은 일정기간 한 가정에 상주하거나 또는 일상생활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기간은 일주일, 15일, 1개월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한 가정의 주부가 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가정생활이 전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의 생활리듬을 유지하여 주며 자녀돌보기, 주택관리, 시장보기, 가정식사등 물리적 도움 이외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에게 정신적 도움도 아울러 주고 있다. 가사봉사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가정내에 장애인의 일시적인 거처, 질병, 파로, 출산등으로 주부가 가족을 돌볼 수 없을 때, 그리고 가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노인의 가사



최신덕 (정부장관 제2실 서기관)

보조 및 가족에게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인 입양, 교육상 문제,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인 부적응의 해소등이다. 가사봉사원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영역에도 개입하게 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경우 조를 짜서 집단으로 수혜당사자를 담당하게 된다.

2. 가사봉사원의 자격

가사봉사원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실제의 가사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과 취미가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한 가정에 개입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변화에 적응능력이 탁월해야 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피곤

을 느껴 짜증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가사봉사원의 학력은 거의 제한이 없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으로도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연령은 19세 이상이 되어야 하나 20세가 넘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가사에 익숙하고 인간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지역의 취업안내 사무실에 요청하면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기간은 8개월(총교육시간 665시간)이고 처음 1개월간은 가사봉사원 협회에서 기술적 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은 사회생활, 가정경제, 보건상식, 의생활관리, 세제적 가정생활등이며 교과과정은 보건장관과 가사봉사원협회가 협의하여 시의성있게 편성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가정에서 필요한 기능교육과 그 기능에 관계되는 이론습득, 가정생활에 관련된 심리적, 법률적 기초상식을 익히고 보건은 영양, 육아, 가정위생, 의복관리를 실습, 토의 발표, 공동작업을 통하여 습득한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시험주관부서는 보건부이고 필기, 구술, 실습시험이 있고 일년의 수습기간을 거친후 자격증이 부여된다. 시험성적 이외에도 실제로

가사봉사원의 자질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함이다.

3. 가사봉사원의 업무수행 방법

1901년 7월 1일 가사봉사원제도를 도입한 법령에 의하면 초기에는 가족수당금고, 농업공제조합, 아동과 청소년보호협회등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당시에는 서비스 수준에도 큰차이가 있어서 농촌의 경우는 한두명의 인원이 있다가 하면, 대도시 예나 도단위는 여러부서까지 갖춘 조직도 있었다. 그러나 업무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가까이 존재하면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66년에는 전국 가사봉사원연맹을 설립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등과 협력사업도 추진하게 되었고 서비스내용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가사봉사원은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업공제조합, 가족수당관련기관등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정도이고 한 가정에 근무기간은 40~300시간을 기준으로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가사봉사원의 보수지급은 사회복지관으로 그들을 고용한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데 가족수당금고, 농업공제조합, 국립가족수당금고, 의료보험금고등 주민들의 필요가 발생한 원인에 의해 가입된 복지전달기구에 의하여 지불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상분만을 하는 가정에 14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 이 아동을 보살피기 위하여 100시간을 상한으로 비용을 앞에서 언급한 기관에서 부담하고 주부가 일시적으로 가사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50시간을 상한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준다.

모든 사회보험가입자는 가사봉사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각 가정의 소득을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가사봉사원의 보수는 수혜자가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장금고에서 가사봉사원이 속해 있는 근무업체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해당가정에서도 일정비용의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된다. 평균적으로 가사봉사원에게 사회복지관련 금고가 지불하는 금액의 14%가 된다고 한다.

프랑스는 적정가사봉사원을 22,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2500명당 1명의 가사봉사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에는 6,000명의 가사봉사원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사회복지금고의 재정형편이 좋지않아 일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사봉사원이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여 가정내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아울러 수요당사자가 최적인 상태로 이 제도를 활용토록 해야 함이 본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가사봉사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이고 그들의 역할은 특수하며 타업무와 비교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다. 업무내용은 예방적이며 동시에 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전체를 위하여 매우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또 가사봉사원은 다른 사회복지종사자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 적절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가정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동시에 다양할 수 있으며

로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할때 사회사업서비스의 효율을 높여줄뿐 아니라 가사봉사원의 업무도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공조체제로 업무를 수행할때 가사봉사원들은 자신들의 일이 정말 다른 사회복지종사자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한다는 자긍심으로 사기를 올려주게 된다.

4. 앞으로의 전망

소외된 가정의 주부가 출산, 질병등으로 가족구성원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없을때 가족은 혼돈속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

소외되고 문제가 있는 가정은 가족간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고 온가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사업종사자로부터 가정의 기능을 지탱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미 1966년에는 전국 가사봉사원연맹조정위원회를 설립한 가사봉사원들은 서비스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외에도 인력증원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등과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프랑스의 각가정이 전통적 형태를 벗어나 편부모, 독신모, 이혼의 증가와 정상가정마저도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유고시에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됨에 따라 가사봉사원 제도는 가족기능을 보완하여 주는 매우 유익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주택취득시 자금출처 조사 기준금액의 남녀차등 없어져

- 국세청의 부동산등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업무 개선사항 소개 -

국세청은 금년 6월1일부터 추가적으로 자금출처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시행함으로써, 증여 혐의 및 부동산 투기혐의 있는 자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사를 강화하되, 주거목적의 주택취득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의 남녀차등을 없애려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I. 배경

부동산등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업무가 사전안내문의 과다한 발송 및 조사실의 없는 과세자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세정채신 방안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세정집행과정에서 부조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1차적으로 사전안내문 발송제도 폐지 등 업무를 개선하여 시행해 왔으나, 금년 6월1일부터 추가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시행함으로써, 증여 혐의 및 부동산 투기혐의 있는 자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사를 강화하되, 주거목적의 주택취득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II. 현황 및 문제점

부동산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



동산 등기자료에 의해 세대주 여부와 성별, 연령별로 정한 일정기준 이상자료들을 전산 출력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기준금액이 현실화 되지 않아 조사 실익이 없는 주택 취득자료들에 대하여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민원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어 왔다. 표본점검 결과,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료

중 주택자료 점유비가 53%이나, 과세 비율은 1% 미만이었다.

이제까지 조사대상자 선정시 남·녀 성별 차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왔으나 최근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성도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왔다.

III. 자금출처 조사업무 개선내용

30세 이상 세대주의 주택구입에 따른 전산사후관리 기준 확대

- 투기목적이나, 증여혐의 없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생략하고 사후관리 실시

- 30~40세 세대주의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취득과, 40세 이상 세대주의 「주택을 늘려가기」 위한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을 배제

※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 조정

40세 이상 세대주 : 3억→4억
30세~40세 세대주 : 1.5억→2억

전산사후관리 대상자 선정시 남·녀 차등폐지

- 현행은 30세 이상 비세대주의 경우, 남·녀 성별에 따라 조사대상 차등을 두었던 것에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추세에 맞추어 남·녀 성별에 따른 차등을 전면 폐지

※ 30세 이상 여성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5천만원이상 취득시 조사
(조정) 남·녀 차별 없이 1억원(40세 이상은 2억원)이상 취득

시 조사하고 이외는 전산사 후관리

자력취득 인정기준 완화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당해 납세자의 소득 및 부동산 거래상황등을 종합 검토하여 자력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유보.

※ 3년간 소득 및 부동산 양도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70% 이상인 경우

(종전은 3년간 소득 및 1년간 부동산 양도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 명백한 증여세 포탈혐의가 있거나, 부동산 투기혐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사 강화

조사 제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최근 3년간 사후관리된 자중 사후관리 전수 및 규모등을 매년 검토하여 부동산 투기 및 증여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대상자는 그동안 조사 유보된 취득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청 단위에서 정밀조사 실시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 변경

● 주택자료

(단위 : 원)

현행					개정			
구분	40세 이상	40세미만 ~ 30세이상	30세미만 ~ 25세이상	25세미만	구분	40세 이상	40세미만 ~ 30세이상	30세미만
세대주	3억	1억5천만			세대주	4억	2억	
비세대주	2억	1억	5천만	2천만	비세대주	2억	1억	5천만
남								
여	5천만	5천만						

● 주택이외 자료

(단위 : 원)

현행					개정			
구분	40세 이상	40세미만 ~ 30세이상	30세미만 ~ 25세이상	25세미만	40세 이상	40세미만 ~ 30세이상	30세미만	
세대주	1억	5천만						
비세대주	1억	5천만	3천만	2천만	1억	5천만	3천만	
남								
여	5천만	3천만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이해 (생물학적 vs 사회학적 성)

추애주 (연세대학교 여성학 강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 제도, 이념, 관습, 문화는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부장제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서 남성들이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통해 사회를 지배하는 통치의 한 체계를 의미하였다. 그 후 여성학자들에 의해 남성간의 지배에 대한 측면보다 남성의 여성 지배가 중심이 되는 성적 불평등의 이론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가부장하에서의 남, 녀 관계란 지배, 복종으로 이루어지며, 그 토대는 남성 우월성, 여성의 열등성의 기초가 되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의 동일시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타고 태어난 성에 의해서 사회학적 성, 즉 심리적 성향, 기질, 성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여성의 삶을 규정짓고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성의 이중규범, 성 폭력, 매 맞는 아내, 성별 노동분업, 노동시장의 성 차별, 무보수 가사노동, 이중 부담 등의 여성문제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운 것이 자연스러우며, 건강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자가 된다는 것은 적극적이며, 공격적이고, 용기가 있어야 하며 야심과 결단력을 가지고 출세지향적으로 되는 것이다. 반대로 여자가 된다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 온순하며 수동적, 소극적, 의존적이고 또한 헌신적이며 모성적이어야 하고 사랑 지향적인 수준의 속성을 갖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심리학자나 자녀 양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부모들은 이와 같은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가르

치는 것이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들의 성품을 개발해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만일, 어린이들의 행동이 어떤 기준에서 어긋나면 그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여성과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남성다움, 여성다움이 사회적으로는 성차별주의를 만들며 심리적으로는 불건강한 인간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란,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변화될 수 없는 자질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남·녀간의 성품이나 기질의 차이는 신이 부여한 것으로서 본능적이며 출생시에 어느 정도 다 정해지고 경험은 단지 보조적인 것일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남·녀간의 모든 차이는 생물학이 결

정한다는 환원주의적 논의를 정당화함으로써 그들의 생물학적 무기는 여성의 자유, 독립을 끊임없이 방해해왔다.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학적 성을 다르게 만든다는 생물학의 내용을 살펴 보기도 하겠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윤리적 문제나 생화학적 반응과 같은 복잡성 때문에 인간의 사촌인 원숭이를 연구해서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 시키기도 한다. Carol Tavris와 Carole Offir가 쓴 "The Logest War"에 원숭이 실험에 대한 문제가 잘 지적되고 있다. 심리학자 H. Harlow는 rhesus 원숭이를 자연상태에서 관찰한 결과, 수 원숭이의 행동이 인간세계의 남·녀의 행동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아 내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의 차이가 유전적인 것인지, 학습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rhesus원숭이를 출생 직후 격리시켜 생명이 없는, 우단천과 철사로 만들어진 대리모에 의해서 양육시켰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특수하게 고안된 놀이방에서 원숭이를 다시 관찰

하였더니 그들의 행동은 자연상태에서의 모습과 일치하였다. 다음 그는 국민학교 2학년 어린이들이 소풍가서 노는 모습을 관찰하여 남·녀 어린이의 행동의 차이를 발견하고는 원숭이 실험을 이에 적용시켰다. 원숭이의 행동을 실험한 결과 선천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유사한 인간의 성차도 선천적이라고 유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유형은 유사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은 다를 수 있다는 실험이 위의 결론을 반증해줄 수 있게 되었다. 심리학자인 Maurice Temerlin부부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들은 침팬지를 출생 직후 격리시켜 같이 살면서 무시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무시는 인간 아버지인 Maurice와 그의 아내 Jane을 자신의 생부, 생모로 알고 있었다. 이들은 무시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침팬지는 성적인 성숙기에 도달하기전까지는 인간 아버지인 Maurice를 사랑하여 농도질은 키스를 할 정도로 애정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발정기가 되면 단호

하게 Maurice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남성을 성적으로 초대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그들은 침팬지에게도 인간과 같은 근친 상간 금기가 있지만 침팬지의 근친상간 금기는 인간의 사회화적인 조건에 의한 것과는 달리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것처럼 많은 동물실험의 인간적용 문제는, 나타나는 현상은 유사하나 결정 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오류의 위험이 내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인간 생물학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남·녀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인자, 성 호르몬(태아기, 사춘기, 갱년기), 모성분능 등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남·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존의 발표된 Money와 Ehrhardt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 보겠다.

우선 유전인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각각 XY, XX로 다르다. 이 다름이 남·녀 행동의 차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어질 수 있는 요소이다. 여기서는 유전인자가 비정상적인 사람의 사회학적 성을 관찰해 봄으로써 유전인자 자체가 인간의 사회학적 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리해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은 Turner's 증후군을 가진 소녀들이다. 이들은 수정 전후에 유전인자 하나가 상실된 사람으로서 그들의 유전인자는 XO인 불완전한 여성이다. 이들의 특징은 키가 작고, 손톱, 발, 발가락이 기형적이며 심장질환이 있고 임신능력은 없다. 이와같이 유전학적으로 불완전한 여성(소녀)과 정상적인 소녀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 Turner's 증후군을 가진 소녀들이 훨씬 여성적



인 성향이 강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적인 옷이나 인형을 보다 더 선호하거나, 장래의 결혼이나 모성 역할을 더 많이 공상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암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전인자 그 자체가 인간의 사회학적 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기존의 통념대로라면 유전학적으로 갖춘 소녀들이 그렇지 못한 소녀들보다 더욱 여성적인 성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 호르몬을 살펴보면 인간은 태아기와 사춘기에 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인 Androgen(테스토스테론)이고, 여성은 Estrogen(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상대방의 호르몬을 서로가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내었다. 성 호르몬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것은 동물실험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방금 태어난 암쥐에게 testosterone을 주사했더니 정상적인 암쥐의 행동을 볼 수 없었다든지 임신한 rhesus 원숭이에게 testosterone을 주사했더니 유전적으로는 암컷이었지만, 수컷같은 암컷을 출산했다는 연구 보고 등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앞에 지적한 동물실험의 인간적용의 문제를 상기해야 한다. 성호르몬과 인간의 사회학적 성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여기서는 호르몬 체계가 잘못 되어 외부생식기가 모호한 모습이거나 외부, 내부생식기가 갈등관계에 있는 경우의 유사 자율동체를 가진 사람들이 연구되어졌다. 사례연구로서 유전학적으로는 남자아이이지만 호르몬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심리학자나 자녀 양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부모들은 이와 같은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들의 성품을 개발해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여성과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남성다움, 여성다움이 사회적으로는 성차별주의를 만들어 심리적으로는 불건전한 인간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계의 이상으로 작은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나 그 부모에게 성전환 수술을 권유했다. 그 충고를 받아들인 부모들은 이 아이가 17개월 되었을 때 성전환 수술을 해주고 성을 재 배정 해주는 작업을 하였다. 즉 이름, 머리모양, 옷, 장난감을 여자의 것으로 바꾸어 주었다. 동시에 아이의 행동, 같은 성이었을 때는 동생을 거칠게 다루고 경쟁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동생이 여자아이로 변하자 부드럽고 친절하며 보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여자아이로 바뀐 이 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어머니를 도와 준다든지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성 호르몬이 남·녀의 사회학적 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전학적으로는 남자인 이 아이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 하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아이의 사회학적 성은 남성의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환경과 양육태도에서 사회학적 성이 바뀔 수 있다면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쫓점



남녀차별정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 한국전기통신공사 김영희씨 사건을 중심으로 -

1. 사건 개요

1982년 체신부의 전기통신 업무를 이관받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여성이 절대 다수인 교환원의 정년만을 55세에서 43세로 낮추자 교환원인 김영희씨가 이 조치가 남녀차별대우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1983년 1월 13일 정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함으로써 남녀고용차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투쟁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사지법과 고등법원은 43세 정년제는 남자교환원(3명)에게도 적용되므로 남녀차별로 볼 수 없고 교환원이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며,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은 노조가 추인한 것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영희씨와 '여성차별정년 무효확인 소송후원회' 등의 노력으로 대법원은 1988년 12월 27일 판결에서 교환직렬 직종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여성전용직종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기법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1989년 4월에 교환직렬직종은 여성전용직종으로 보아야 하고 이

직종을 다른 직종과 달리 정년을 낮게 정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 결과로 인하여 김영희씨는 7년만에 복직되어 근무하였고, 위 공사는 이 사건이 소송중이었던 1984년 6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교환원의 정년을 43세에서 50세로 연장하였고 이후 공무원의 정년연장 조치에 따라 전 직종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3년 연장하게 되어 교환원의 정년도 53세가 되었으나 다른 직종의 정년은 58세로 여전히 정년차별문제는 남아 있었다.

1992년 12월 초 한국통신공사는 김영희씨가 53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정년퇴직을 예고하였고 이에 김영희씨는 여성전용직종인 교환직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한 정년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므로 교환원의 정년도 일반직과 같이 58세로 되어야 한다며 1992년 12월 11일 노동부에 진정하였다.

노동부는 교환원은 여성전용직종으로서 노동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남녀차별 정년제도로써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라 하여 한국통신공사에 대하여 1993년 5월 13일까지 인사규정을 개정토록 시정지시하였다.

김영희씨는 동 인사규정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 정년퇴직되었고, 1993년 3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정년퇴직)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을 노동부의 판단과는 달리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남녀차별정년 철폐를 위해 김영희씨 사건을 지원키로 하고 5월 25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영희씨는 현재 5월 29일 부당해고구제를 위한 재심청구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법원 제소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아 직종차별로 드러나는 남녀차별정년을 개선하는 선례를 남길 계획이다.

*사건일지

1982. 1. 1 채신부의 전기통신업무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됨

1982. 5.20 동 인사규정 제36조 1항 신설. 교환직렬만 정년 43세로 낮춤.

1982.12.31 김영희씨 동 인사규정 제36조 1항에 의해 43세로 정년퇴직

1983. 1.13 서울지법에 민사소송제기

1983. 6.21 1심 기각 판결

1983. 7. 7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차별정년 무효확인 소송 후원회' 결성

1983. 7.19 고등법원에 항소

1984. 6.29 한국전기통신공사, 교환원 정년 43세에서 50세로 연장

1985. 2.15 고법 패소

1985. 3.14 대법원에 상고

1987. 9. 4 한국전기통신공사, 일반직 정년 55세에서 58세로 연장 (교환원 50세→53세)

1988.12.27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1989. 4.19 고법 원고승소판결

1989. 6.14 원직복귀

1992.12. 9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통신공사에 차별정년 시정 촉구 공문 발송

1992.12.11 서울지방노동청에 고평법 8조 위반으로 진정

1992.12.31 53세로 정년퇴직

1993. 3.30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차별정년)구제신청

1993. 3.31 서울지방노동청 진정처리 결과 보고: 남녀차별로 간주, 93년 5월 31일까지 인사규정 개정토록 시정지시

1993. 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원고 기각 결정

2. 양측의 주장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요지

적용근거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장 또는 사회적 신분은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정년, 퇴직, 해고)

(1)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공사 단체협약중(정년) - 조합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에 의한다.

*통신공사 인사규정 제36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일반직 58세(교환직렬 53세)

신청인(김영희)주장
정년차별의 유형상 동일직종의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도 남녀차별정년인 것으로서

(1)교환직종은 전원이 여성으로서 여성전용직종이며
(2)교환업무는 단순기능직으로서 노화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당연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을 포함한 타 일반직의 정년을 58세로 하면서 단순기능직인 교환직만 53세로 하고 있으며,
(3)경영사정이나 노사합의 및 여론조사 결과가 강행법규 위반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회사측 주장대로 판단하더라도,

a)영여인력문제는 1982년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1988년까지 3,500명의 증원이 있었고 그후 정년을 10년이나 연장하였으며 교환원 평균연령이 30대로, 정년연장으로 인한 부담은 미세함으로 설득력이 없고,

b)노사합의문제는 정년차등 연령에 대한 구체적 명시적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여론조사는 표본조사로서 교환원 전원에게 정년에 대한 직접적 의견조사를 한 결과가 아니므로 이 또한 정년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여성전용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인사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며, 무효인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조치는 부당한 해고이다.

피신청인(한국통신)주장

평등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공사의 위와 같은 남녀간의 정년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는 점에 귀착된 것이므로, 그 구체적 사유를 보면

(1)경영상 사유로서 자동화로 인한 영여인력이 계속 늘어나는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유휴인력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며
(2)53세 정년은 노사합의를 거쳐 오랜기간 이의없이 시행되어 왔으며
(3)정년격차가 완화되었고(12년차→5년차)
(4)교환직렬의 정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년연장은 원치 않고 있으므로 교환원의 정년 53세는 정당하며, 타직종과의 차이 또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임으로 범위반이 아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1)남자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강행법규위반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2)정년격차가 많이 완화되었고
(3)영여인원이 업무에 배치되어 정리

해고 문제 발생소지가 있고

(4)1년 연장신청할 수 있음에도 연장신청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기각한다.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견해

1)남녀차별 아닌 직종차별이라는 판단에 대하여

(1)남자 배제규정이 없다고 하나 지금까지 주로 여성이 취업해왔고 남성은 예외적으로 취업했으며, 통신공사에서는 단 3명의 남성이 취업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전원 여성으로서 명백한 여성전용직종이다.

(2)나머지 여직원 정년이 58세라 하나 그렇기 때문에 교환직의 정년 또한 58세가 되어야 하며 58세가 되지 못하고 53세로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58~54세의 여성은 교환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는 남녀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백한 범위반이 된다.

2)교환직렬 정년 규정에 있어

(1)여론조사 결과-교환원 전원에게 정년에 대한 직접적 의견조사를 한 결과가 아니므로 정년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2)격차가 많이 완화되었으므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하여 -남녀차별은 차별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차별이다.

(3)영여인력 부분

*타직무 종사자(1650명): 교환직의 타직무 전환 가능성 제시.

*김영희씨진 고법 확정 판례

"자동화에 따른 교환인력의 감소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나 그러한 요인이 있다고 하여 정년을 낮추어 정할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지노위 결정서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합리적 기준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을 들고 있어 경영사정은(합리적기준)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노동부 예규

판단기준: 사업목적, 직무의 성질, 태양, 작업조건.

3)정년퇴직조치에 대하여

연장신청은 53세 정년 차제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퇴직금의 수령이 정년퇴직 혹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년 연장 신청절차-인사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난 92년의 경우에는 1명 탈락의 예가 있어 교환원 정년은 53세가 명백하다.

4. 결론

교환원의 53세 정년이 타직종 58세 정년에 비하여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 및 노동부 예규 등이 제시하는 판단기준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며, 지노위가 기각 사유로 들고 있는 경영사정, 노사합의, 여론조사 결과 및 연장거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사단법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농협이 지난 85년부터 전국단위조합별로 운영하고 있는 농협 주부대학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회원들은 주부대학 과정 중의 농촌현장학습과 농번기 일손돕기를 통해 고향농촌의 어려움을 직접 보게 되었다. 이에 고향농촌돕기와 도시소비자 보호운동에 직접 참여 하자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어 지난 90년 10월 23일 서울유관순기념관에서 '농협주부대학동창회' 전국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회원간 친목과 우의증진을 물론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룩하며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농촌발전과 소비자보호운동에 앞장설것을 다짐하며 초대회장에 윤수자씨를 선출하였다. 91년 2월 1일 개최된 제1회 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전국협의회 명칭을 '농촌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으로 바꾸고 단체의 표어로는 '고향사랑은 나라사랑'으로 채택하여 지역단위 동창회를 전국단위로 활성화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농촌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을 여성단체로 정식 등록하기로 하고 추진반을 구성

하였다. 마침내 오랜 노력 끝에 93년 1월 13일 "농촌"을 "고향"으로 바꾸어 보사부의 사단법인 여성단체로서 정식 허가를 받아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창립총회를 2월 8일 농협 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올라온 이백여명의 대의원들은 초대회장에 윤수자씨를 비롯하여 16명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현재 '고·생·주·모'의 조직은 전국 487개 조합동창회를 근간으로 148개 시·군지부, 15개 시·도지회로 구성되어있다. 전국의 회원수는 14만여명에 달한다. 회원중 도시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는 2:1 정도의 비율이다. 고·생·주·모는 사업목표를 고향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에 앞장서는데 두고 열심히 활동해왔다. 그간 농산물직거래는 965회,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보호캠페인 340회, 과소비추진운동과 우수농산물소비운동 738회 등 지역단위로 많은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단법인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하면서 고·생·주·모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실제 건전한 농촌을 만들고 아울러 도시 역시 건전한 꽃을 피울수 있도록 회원 스스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

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도시회원들은 특히 농번기 일손돕기와 농한기 폐비닐, 빈농약병 수거 및 농기계 보내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지난 3월 1일에 3·1만세운동의 상징이었던 충남 천원군 병천면 아우내장터에서 전국 1만여명의 회원이 모여 아우내 만세대회를 개최하였다. 두 넋물이 만나 어우러진다는 아우내는 도시와 농촌여성이 하나가 된다는 협동의 뜻이 담겨있으며 이는 여성이 주도한 만세운동의 현장이었다. 조상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겨레의 얼인 쌀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애향·애농·애국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단법인 창립대회후 가진 첫번째 행사였다. 그후 5월 4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우리쌀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백그라운드들이 우리쌀 천육백봉지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앞으로도 농협주부대학을 수료한 주부들에게 우선적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고향농촌을 지키는데 한몫을 할 계획이다.

방송3사의 봄철 프로그램 개편, 실속없다

개편결과 물량에 비해 그 내용면에 있어 실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간에 쫓긴 졸속제작, 반응이 신통찮은 프로그램은 별다른 해명도 없이 다시 개편하여 시청자를 혼란케하는 등의 문제와 함께 모방, 경쟁적 프로그램 양산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모니터회는 1993년 5월12일 모임을 갖고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니터해 온 방송 3사의 봄철 프로그램 개편 내용을 토의하였다.

4월12일 가장 먼저 개편한 MBC에 이어 SBS가 4월26일 개편을 하였고, KBS는 5월1일 봄철 정규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정규 개편 이전에도 프로그램 일부를 조정하고 정규 개편 이후에도 수시로 조정을 거듭하고 있는가 하면 MBC는 오는 24일 추가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등 개편을 통한 시청률 확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세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편은 KBS와 MBC가 신입사장을 맞아 많은 제도 개편과 함께 실시한 것이며 특히 KBS는 1TV와 2TV의 차별화와 함께 "신 한국 창조를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한다."라는 목표 아래 오락, 드라마 뿐 아니라 시사·정보·보도 영역에까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였다. 그 규모면에서도 엄청난 KBS는 무려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MBC는 13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6개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그러나 모니터



내용 토의 결과 물량에 비해 그 내용면에 있어 실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간에 쫓긴 졸속제작, 반응이 신통찮은 프로그램은 별다른 해명도 없이 다시 개편하여 시청자를 혼란케

하는 등의 문제와 함께 모방, 경쟁적 프로그램 양산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 졸속제작의 악순환 부르는 수시 개편

이미 개편을 일단락지은 각 방송사들이 시청률 확보에 급급해 수시로 편성을 바꿔 "준·하계 프로그램 대개편"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 예로 MBC는 신설되었던 "생방송 전국 출동"을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정되고 있는 추가 개편에서 한달만에 폐지할 것이라고 한다. 또 KBS는 2TV의 "토요일 밤의 쇼", "사랑의 터널", 1TV의 주말 "KBS 뉴스"등의 신설 프로그램을 시행 1주일 만에 방영 중단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도 미리 결정되지 못한 채 혼란을 거듭했는데 예를 들면 MBC "음악이 있는 곳에"의 진행자가 '이수만'으로 신문에 보도되었으나 '최명길'이 진행을 맡고 있으며 토크쇼 "수요 스페셜"은 KBS와의 진행자 스카우트 경쟁으로 방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도 진행자를 선정하

지 못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이숙영'으로 결정하는 해프닝을 보여주었다. KBS의 「특급 퀴즈코리아」는 '이상용'의 진행으로 한국의 풍습,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외국인이 출연하였는데 어느새 진행자도 바뀌고 출연자도 모두 연예인으로 바뀌었으며, 형식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러한 두 방송사의 수시 개편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정이라기 보다는 철저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제작된 프로그램들을 시험적으로 내보낸 뒤 단 기간의 시청률을 봐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즉각 방영중단하여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속 제작하여 방영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들게 한다. 이같은 현상은 세 방송사의 시청을 우선 정책에서 비롯된 과잉경쟁의 산물로서 시청자를 실험의 대상 정도로 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시청자의 편

의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

2. 모방, 경쟁적 프로그램의 범람 「자니온 쇼」에 이은 「주병진 쇼」가 인기를 끌자 방송 3사에서는 이번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서 토크쇼를 앞 다투어 신설했다.

KBS 2TV는 기존의 「밤으로 가는 쇼」를 주 2회에서 3회로 증편하였고 「조영남 쇼」를 신설하여 목요일·금요일 심야에 주 2회 방영한다. MBC 또한 「세상사는 이야기」외에 수요일에 「이숙영의 수요일쇼」를 신설하여 경쟁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시청자들은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심야시간에 거의 매일 토크쇼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토크쇼들은 개그맨, 가수, DJ등 비 전문인을 진행자로 내세우고 있고 내용과 구성면에서도 독창성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심야프로그램이라는 미명 아래 성인층에 알맞은 진솔한 대화보다는 선정적 대화와 분위기 연출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숙영의 수요일쇼」에서 1회 출연자 금난새, 홍정희부부에게 그들만이 갖는 전문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질문은 한 마디도 없고, "첫 키스는 언제?"라는 식의 부부관계 위주의 질문으로만 일관했고, 최무룡, 최민수 부자의 출연시에도 강효실과 최무룡의 이혼으로 생긴 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는가 하면 느닷없이 강효실 씨를 전화로 불러내어 최무룡씨와 통화하게 하여 두 출연자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당스런 진행을 보여주었다. 또 진행자가 보여준 미니스크트 차림의 춤춤씨는 토크쇼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또한 KBS 1TV의 「다큐멘터리 극장」, 「사건 25시」 MBC 「사사 다큐멘터리」 등 다큐멘터리물들을 SBS의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기로 부합하여 그 포맷과 진행방식을 유사하게 하여 신설하고 있다. 또 특집방송 이후 정규 편성된 「음악이 있는 곳에」 성공 이후 「엔플러그드 음악」의 유행을 타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신설되고 있다.

기존의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와 비슷한 형식의 「KBS 열린 음악회」 「토요일 밤의 쇼」 「MBC 음악이 있는 곳에」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요즈음 10대 위주의 현란한 쇼와 차별화되어 다양한 시청자층을 위한 가요쇼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순간의 유행에 힘입은 편성에 출연자 겹치기 출연 등으로 신선감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모방, 경쟁 프로그램 방송은 창작 의식없이 인기를 얻고 있는 타 방송 프로그램을 베껴 내놓은 것으로 방송국측의 윤리성을 의심케 한다.

3. 개편된 여성과 어린이 프로그램

세 방송사 모두 교양, 정보 프로그램 강화라는 취지 아래 어린이 프로그램을 대폭 줄여 여러 단체와 시청자들로 부터 항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신설된 어린이 프로그램이 과연 동심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5월8일 저녁 방영된 「우리들 세상」은 교육적이거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 성인 프로그램의 일부를 떼어놓은 듯 하며, 어른 뻔치는 어린이 진행자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맹랑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을 출연시켜 놓고 국민학생들의 전화 문의를 받아 연예인들의 신변에 대해 묻고 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린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과학, 노래, 예절 등의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대상 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여성문제를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여성을 위한 진정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던 「생방송 여성」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 정보를 주던 「TV 슈퍼마켓」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주부대상 프로그램인 KBS의 「독점, 여성 정보」는 토요일 오전 09:00-11:45

까지 거의 3시간에 가까운 방송을 하면서도 실제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나 교양보다는 여성지의 화보를 연상케 하는 패션, 요리, 미용 등 화려한 화면과 가정안에서의 가벼운 주제로만 내용이 일관되고 있다.

MBC 「아름다운 여성」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성이 되려면 오로지 신체적으로 날씬함과 예쁜 외모, 패션에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처럼 방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SBS가 신설한 「세계의 여성」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세계 여성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다. 다른 여러나라 여성들의 삶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관심이 가는 점이며 TV다큐멘타리를 통해 살펴본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속에서 접하는 여성의 문제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대상도 일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나라들로 다양하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된다.

4. 기타

SBS는 문제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꾸러기 대항진」 폐지 이후 프로그램 일부를 「깜짝 비디오쇼」라는 제목으로 간류시키고 있으며, 「꾸러기 대항진」에 자주 출연했던 일부 연예인 3명을 진행자로 기용한 「새내기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 기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내보내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저질시비 오락 프로그램을 없앤 것으

로 보이나 실제로는 한 프로그램을 조개어 여러개의 프로그램으로 분산시키는 눈가림식의 편법을 쓴 것이라 하겠다.

세 방송사는 이번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총력을 기울였고 세 방송사 모두 홍보전 또한 치열하다. KBS는 간판 보도 프로그램 「9시 뉴스」가 끝날 무렵 대하드라마 「면동」이 끝이어서 방영된다는 것을 홍보하며 시청할 것을 종용(?)했고 MBC도 「생방송 새아침」을 홍보하며 진행자 「박영규」를 대담자로 뉴스에 초대하기까지 하였다. 아무리 홍보가 중요하다지만 순수 보도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타 프로그램을 무는 큰 소식인 양 선전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SBS, MBC, KBS 세개의 방송사가 앞세운 이번 봄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질 오락 프로그램의 지양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확대에 있다. 그러나 시청률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슈들이 제대로 시행될 지 아니면 겉치장에 머무는지는 모를 일이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추가 개편과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한 일이나 현재까지 보여준 내용은 그리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개편, 좋은 프로그램 방영이 한시라도 빨리 정착되어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혼선없이 약속된 시간에 시청하게 되었으면 한다.

(정리: 손문선·본회, 매스컴 모니터)



여성상 왜곡묘사 여전한 주말연속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6월 16일 모임을 갖고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이었던 세 TV 방송의 주말연속극 KBS 2 '연인'(토·일 19:55-20:55), MBC '엄마의 바다'(토·일 20:00-21:00), SBS '산다는 것은'(토·일 20:00-21:50)에 대하여 모니터 결과를 토의하였다.

모니터 기간은 6월 5일부터 13일까지의 4회 방영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드라마의 흐름상 앞 방영분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주말연속극은 주말 저녁 온가족이 모여 TV를 시청하는 시간대이므로 내용이나 장면 등에서 온가족이 시청하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건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드라마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방송3사의 주말연속극이 동시에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너무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묘사함으로써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연인'의 경우 일부 특정층 취향의 드라마로서 메시지가 부



족하다는 점에서 주말연속극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상류계층 중심

요즈음 많은 드라마들이 지나치게 상류계층으로 전개되어 가고 이번 방송3사의 주말극도 예외는 아니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값진 의상에 화려한 악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다. 게다가 각 개인의 자가용에 운전수, 가정부까지 고용하고 있고 개인의 오피스텔 거주와 일상화된 팩스 사용, 사업가, 판점사, 의사, 화가, 동시 통역사, 프로골퍼, 기자 등 소위 말하는 일류의 최첨단 직종은 모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 자체가 어떻느냐보다는 그 사람의 생활정도나 배경 등 조건들이 우선되어지는 가치관이 강조되어 상대의 내세울 것 없는 조건때문에 결혼이 보류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고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일반 시청자들은 커다란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드라마의 이같은 상류생활 중심의 전개는 일반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나만이 초라하고 어렵고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빈과 부가 좀더 슬기롭게 조화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성 결여

드라마란 원래 픽션이고 따라서 어느 정도 허구성은 당연하겠지만 드라마 내용이나 인물 성격묘사, 상황설정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전개되어 드라마의 흐름을 어색하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인'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는데 드라마의 중심인물이 검사, 변호사, 기자, 화가 등 개성과 성격이 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성격묘사나 직업관 등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특히 대사 용의주도하고 빈틈없는 상훈(이효정 분)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없이 내색조차 않고 순순히 물러나는 점이라든가 첫눈에 반한 연희(이희향 분)때문에 수년간 사귀어온 회경(신애라 분)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의 표현이 너무 미약해서 드라마의 긴장감이 없으며 애매모호한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직업, 애정관, 생활상 등은 모두 신세대 감각에 맞추어 표현하고 있으나 등장인물들의 나이나 성격, 사고 등은 기성세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극의 흐름과 등장인물이 걸도는 듯하여 현실감을 잃게 한다. MBC의 '엄마의 바다'에서는 동재(최민수 분)

가 바쁘고 여유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조카에게만은 유독 자상하며 조카와 함께 한가롭게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모습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며느리(권기선 분)는 맛사지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밖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구박에도 무조건 부인편만 드는 아들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표현으로 지적되었다.

여성상의 왜곡

세 방송사의 드라마 작가들이 모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들에서 나타난 여성상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작가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성상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이끌어 가려는 의식없이 지금까지 사회가 허락했던 역할만을 반복해서 답습시킴으로써 발전해가는 사회상에 비추어 여성의 의식을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들은 좀더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리라 생각된다. 왜곡된 여성상을 살펴보면 며느리의 구박을 받으면서 집안 일을 도맡아 아들집의 가정부로 전락해 버린 시어머니, 지나치게 가정적이고 무능력하며 현실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엄마(엄마의 바다), 필요없는 잔소리, 지나친 간섭에 미혼의 아들이 자신의 오피스텔로 분가해 버릴 만큼 부담스러운 엄마(연인), 사사건건 트집잡아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냉혹하고도 권위적인 엄마(산다는 것은) 등 여성의 역할이 바람직하지 않게 그려지는 반면 그에 비해 남성상은 가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아들을 믿고 그 의

견을 묵묵히 수렴해주는 믿음직스런 아빠(연인)와 딸은 일에 충실하고 자기주장 또한 분명하며 의젓한 아들들(연인, 산다는 것은)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엄마의 바다'에서는 드라마의 주제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역량이 너무 미약하고 그동안 아빠에 의해 주도되었던 가정의 동재(최민수 분)라는 또 다른 남성에게 의해 이끌려갈 것이 예상되는데 가능한 한 동재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남자에 의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구원받는 여성의 모습이 아닌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말극은 주로 가족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온가족이 같이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생각되며 그의 파급효과 또한 지대하리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에게도 분명한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주어서 각자 존재의 필연성을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정리: 정은선(본회 매스컴 모니터)

여·성·계·동·향

BPW, 부부간 증여세 폐지 촉구

가을 정기국회서 조세법 개정안이 논의 되는 시기에 맞추어 부부간 증여세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회장 홍연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직업여성클럽은 새서울 클럽 정기월례회에서 강기원 변호사가 '부부간 증여세와 그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하는 한편 이 문제를 올해 하반기의 여성운동의 주요쟁점으로 삼고 연대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신임회장에 신영순 전의원

한국여자의사회 제17대 신임회장으로 신영순 전의원이 선출됐다. 전국의 여자의사 4천5백명 중 절반가량인 2천명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한국여자의사회는 에이즈 예방, 폐트남 혼혈아 문제, 여성건강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단체. 신영순 신임회장은 여자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봉사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일본의 여성정치현장 방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신낙균 회장을 비롯한 회원 6명이 아시아재단 초청으로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의 여성정치현장을 방문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일본시찰단은 이번 방문기간 중 일본 여성유권자

연맹, 아시아여성회의, 도쿄 및 가나가와 네트워크, 가나가와현 지방정부 등을 방문했으며 가네히라 동경시 여성부시장, 오카자키 중의원(자민당 여성국장) 등 여성정치인을 면담하고 돌아왔다.

도산아카데미·한국여성 정치연, 여성관련 정부기구 개선안 제시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손봉숙), 도산 아카데미연구원(원장 류태영)은 '여성관련 정부기구 이렇게 바꾸자'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 세미나를 5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여성관련 정부기구 개선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기존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격상시킬 것 ▲여성처를 신설해 정부(제2)장관실 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여성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기능을 강화할 것 ▲교육부에 여성교육국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영삼 대통령, 여장군 임명 검토 및 성폭력 특별법 제정 약속

김영삼 대통령은 5월 21일 청와대 본관으로 주요 여성단체장 81명과 여성장관, 여성국회의원 등 여성계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가졌다. 취임 후 여성계와의 첫 공식적인 자리였던 이 모임에서 김 대통령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계속적 실천을 다짐하는 한편 여장군 임명문제 등 여군의 지위향상을 검토 중이며 성폭력특별법을 다음 회기 중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총 선정 모범여성노동자상에 이금희 상임은행 노조 부위원장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명자)는 제28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기간(5월 1일~30일)을 맞아 '93 모범여성노동자 대상 수상자로 상임은행 노동조합의 이금희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이금희 부위원장은 그간 남자행원들에게만 주어지던 주택지원금 무이자 대출(1인 3천5백만원)을 기혼여성들도 받도록 하는 등 여행원의 지위 향상에 큰 공로를 세웠다.

여성산악인 에베레스트 정복

한국의 여성산악인들이 5월 11일 8천8백미터에 달하는 세계의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쾌거를 올렸다.

정상에 오른 지현옥(34. 대장), 김순주(25. 식량담당), 최오순(27. 촬영담당)씨는 세계에서 에베레스트에 오른 18, 19, 20번째 여성이며 이들 원정대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3번째의 '여성팀'.

산소부족과 눈보라를 뚫고 벌인 마지막 8시간의 악전고투를 이기고 세계 최고봉에 오른 이들 여성 산악인들은

여·성·계·동·향

전국민의 찬사를 받았으며 6월 1일에는 청와대 초청을 받고 대통령과 오찬을 나눴다.

청와대에 첫 여성담당 정부비서관 탄생

대통령비서실에 처음으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정부비서관이 생겼다.

민자당 여성국장을 지냈던 정옥순(55)씨가 청와대의 첫 여성 대통령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옥순 비서관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66년 공화당 2기 공채 사무요원으로 시작해 30년 가까이 정당생활을 해왔으며 정책 실무에 밝은 '여성통'이란 평을 듣고 있다.

맹인 피아니스트 오은경 연주회 성황리에 종료

여성신문사가 초청한 맹인 피아니스트 오은경양의 전국 5대 도시 순회 연주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산,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서 열린 오은경양의 연주회는 뜨거운 관심과 갈채 속에서 진행됐다.

서울 예술의 전당 연주회에는 영부인 손명순 여사가 참석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연주회가 끝난 뒤 여성신문사는 연주회 수익금을 오은경양의 장학금으로 전달했으며 진로문화재단에서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성주의 화가 윤석남, 모성 주제로 한 개인전 가져

여성주의 미술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윤석남 씨의 두번째 개인전이 6월8일부터 14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미술전은 '어머니의 눈'이라는 제목아래 모성을 주제로 한 나무조각 작품들이 선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어머니의 삶에 담겨있는 다양한 표정을 전달하는 독창적인 표현기법으로 여성주의 미술의 새로운 구조를 보였다고 평가되는 전시회였다.

고정희 시인 추모문집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나와

작고한 고정희 시인을 기리는 추모문집(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이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에서 출간. '여성해방문학가 고정희의 삶과 글'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에는 고정희 시인의 여성해방문학의 세계와 그를 추모하는 지인들의 애절한 심정이 담긴 글이 실려 있다.

이 책은 6월 12일 금호미술관에서 원불교식으로 진행된 2주기 추모제에서 고정희 시인 영정 앞에 놓여졌다.

원진레이온 여성노동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자살

91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자살 사건이 일어났던 원진레이온에서 지난 5월 23일에 여성노동자인

고정자 씨가 또 자살했다. 고장자 씨도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자살하게 된 것.

원진레이온 공장에서 직업병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민자당 여성실, 신정부 1백일 여성정책 여론조사

민자당 여성실(실장 주양자 의원)은 신정부 1백일을 기념한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현대리서치에 여성정책 추진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각계 여성인사와 여성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사무직 여성 등 여성 여론선도층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신정부가 집권하는 기간동안 여성지위가 향상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93.8%에 이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결과로 나왔다.

그러나 공약 인지도나 정부의 여성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클로딘 쉬나이더 미국 전의원 초청 강연

한국여성정치연맹(총재 김정례)은 6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창립 제2주년을 기념하는 강연회와 여성지도력 개발 연수회를 가졌다.

미국의 4선의원 경력을 가진 클로딘 쉬나이더 전의원이 초청돼 미국의 여성정치현실에 대한 강연을 했다.

김효선 (여성신문사 차장)

대한간호협회

제20차 국제간호협회의
총회 참가

대한간호협회 1백여명의 회원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6월20일부터 열린 국제간호협회의(ICN) 제20차 총회에 참가했다.

세계 10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간호협회의는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2년마다 각국 대표자회의를 갖는 국제적인 기구로서 세계간호사의 권익과 복지향상, 학문적 발전을 위한 노력등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Unity for Quality」를 주제로한 주제강연과 학술프로그램으로 짜여진 다수의 발제강연, 공동관심분야·임상분야·특별관심분야등에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와함께 간호학생대회, 전시회, 영상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총회기간중 음악회, 패션쇼, 포크댄스등의 순서도 마련되어 국제적인 간호학술교류는 물론 각국 간호사들의 우의증진을 도모하게됐다.

또한 이번 총회기간중 열리는 각국 대표자회의에서는 4년전 제19차 국제간호협회의총회(서울에서 개최)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우리나라의 김모임(연세대학교간호대학장) 국제간호협회의회장이 4년 임기를 마치게 되어 새로운 임원선출이 있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제20차 국제간호협

회의(ICN)총회에 대한간호협회 대표로 박정호회장과 고운회사무총장을 파견했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우리 고유 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각도 별미밥식단 발표회’
성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우리 고유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각도 별미밥 식단발표회’를 지난 5월 11일 서울농협중앙회 대강당과 5월 14일 광주시 전라남도여성회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실시되었다.

별미밥은 이제까지의 단조로운 쌀 조리습관에서 벗어나 채소, 어패류, 수조어육류등을 활용 “밥”만으로도 충분한 영양과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인하대학교 김광언 교수는 “우리 식생활에 있어 밥의 문화에 대한 강의”에서 사람의 입맛은 평생 변하지 않게 마련인데 그 입맛이 변하게 되면 민족성도 변하게 되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햄버거 피자에 길들여지면 우리 민족성의 장점인 은근과 끈기에 변화를 가져와 민족성에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사가 일시적 운동이 아닌 행태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부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의 후 본회 안수춘 부원장은 각도 별미밥 7종에 대한 조리시범이 있었으며 별도 마련된 전시장에서는 각도 별미밥 32종과 대표적인 식단구성 표본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의 쌀밥문화를 재조명해 보는 한편 다양한 조리법 보급을 통한 쌀소비 촉진에 도모하였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아름다운 추억’ 자서전
출판

여귀옥회장은 성령운동으로 절제운동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적으로 기록한 자서전 “아름다운 추억”을 5월 10일자로 출판했다.

출판기념행사에는 소련대사 부부, 캐나다대사 부인, 구찌 부회장, 목사 및 절제회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돈암장 자택에서 김정주사무총장의 그리스도인의 세가지 명칭 즉 ‘새 피조물,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출판기념 설교가 있었다.

절제활동 홍보

김정주사무총장은 한국 절제활동을 세계절제회장단(10여개국)과 해외지회에 알리는 편지를 발송했다.

또한 기독교간지「열린 마음」에 기독교 청소년에게 필요한 절제교육이란

제목으로 술·담배·마약의 해독을 청소년에게 계몽하는 일에 정부·학교·가정·교회가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한·일회원 친선교류회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는 지난 5월 12일 땀하탄호텔 2층에서 일본 승공연합 회원들과 친선교류회를 가졌다.

일본의 吉田美奈子의원은 회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여성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이에 본회 임원진이 자리를 같이하여 서로 소개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 단합 야유회

본회는 5월 18일 우이동 그린파크에서 새로이 임명된 임원들간의 단합을 목적으로 야유회를 가졌다.

각처에서 43명의 임원들이 모였으며 1부에서는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수여식과 아울러 문상회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문회장은 “오늘 시간을 통하여 임원들이 더욱 더 단합하여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자”며 이시대에는 여성들이 나서야하며 특히, 승공연합 여성회원들이 앞장서서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참석한 임원들이 새로운 각오를 갖도록 하였다.

여성지도자교육

본회에서는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매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에 실시한 교육에서는 문상회회장이 「통일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하였고, 이어서 강덕래 전 마포구회장이 나와 마포구에서의 승공연합활동 성공사례를 발표하여 참석한 임원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신이 내린 천형 AIDS」라는 VTR을 상영하여 AIDS예방교육을 하였고, 이를 본 회원들은 AIDS예방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국퇴역여군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한국퇴역여군회에서는 신한국 창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에 여군 예비역(대령)병과장 출신 8명과 여군처장을 포함한 10명이 인터콘티넨탈 백조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 여성장군 임명
검토 약속

5월 21일에 있는 여성계 인사 71명 초청 청와대 오찬시, 정영숙 회장이

여성장군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져 김영삼 대통령께서 검토해 볼것을 약속했다. 이어 6월 9일에는 민자당 당사 3층(중회의실)에서 주양자 여성실장의 주최로 여군 병과장 출신과 간호장교 포함 20명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부부간 증여세 폐지에
관한 토론회

홍인숙 본연맹회장의 발의로 B.P.W. 새서울클럽(회장 심정섭)은 지난 5월 11일 월례회를 갖고 “부부간의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강기원(여성변호사회 회장)변호사를 초청,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또한 5월 12일 본 연맹의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1. 본BPW는 부부간의 증여세문제를 확대시켜 연맹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연대적으로 여성운동을 전개시키기로 한다.
2.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여성에게 홍보 및 의식화를 한다. “부부의 별산제”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우리 민법에 존재하는지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여성이 너무나 많다.
3. 본연맹 기획위원회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지속적 연구 및 행사를 계획한다.

편집후기

여협 30년사가 곧 나온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사라 할 만큼, 50년대 말부터 80년대 후반까지의 그 변혁의 시기에 여성의 영광과 고난을 기록한 여협 30년사는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명확히 이해하고 내일을 전망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책을 펴내는데 「여성」지가 중요한 1차적 사료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정확하고 빠짐없는 사건 및 상황 기록지로 「여성」을 만들 것임을 다짐케 한다.

월간여성 ● 1993년 6월호 통권 308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김경오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건·사진: 전라기획

발행일자: 1993년 6월 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강로 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조창순

위원: 김효자/문현경/박금옥/

서은경/신동식/오종자/박영재

담당: 권수현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조금만 신경 쓰면” 속까지 보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감치미 좋은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신선한 재료가 골고루 듬뿍

상상한 야채와 생선을 고를 때처럼 양념을 고를 때도 조금만 더 신경 써 보세요. 쇠고기에 파, 마늘, 양파 신선한 재료가 골고루 듬뿍 들어 있는 고급양념 감치미- 역시 제대로 된 양념이 음식맛을 제대로 살려줍니다.

하나 하나 따져봐도 역시 감치미

- 진공건조공법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므로 자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 국내 종합조미료 최초로 KS마크를 획득하여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 50g에서 1kg까지 다양한 규격이 있으며 어디서나 손쉽게 살 수 있는 스틱형포장 제품도 있습니다.
- 온갖 해물30%의 해물감치미, 멸치33%의 멸치감치미는 요리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줍니다.



주식회사 미원